

포상규정

제정 2021.6.2. 규정 제89호
일괄개정 2024.5.7. 규정 제176호
개정 2024.7.8. 규정 제184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. 다만 이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8.>

1. 시민
2.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
3. 공단 임직원

제3조(포상권자) ①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는 이사장으로 한다.

② 포상은 이사장이 직접 수여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(傳授)할 수 있다.

제2장 포상의 시기 및 종류

제4조(포상시기)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표창장
2. 감사장
3. 상장

제6조(표창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,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1. 공단의 제도·서비스·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시한 경우
2.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한다. <개정 2024. 7. 8.>

1.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
2.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
3.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
4.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
5. 그 밖에 공단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

③ 이사장이 표창장을 수여 또는 대상자를 타 기관에 추천하는 경우에

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7. 8.>

제7조(감사장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및 시민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8.>

1. 공단 운영 또는 행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
2.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

제8조(상장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및 시민 등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8.>

1. 체육대회, 경연·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
2. 교육·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

제9조(수여장 및 부상) 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.

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,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3장 공적심사위원회

제10조(설치 및 구성)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사업본부장 및

부·소장으로 한다. <개정 2024. 5. 7.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추천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장 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장 보 칙

제14조(포상의 수령)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대장 기록 등)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

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7. 8.>

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 포상 받은 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7. 8.>

제16조(포상의 취소) ① 이사장은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
2.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,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할 수 있다.

제17조(이중포상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.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6호, 2024. 5. 7.>

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4호, 2024. 7. 8.>

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(제9조 관련)]

제 호			
	표	창	장
			주소 또는 소속
			직 성 명
	(표	창	문)
	년	월	일
	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○ ○ ○		

[별지 제2호서식(제9조 관련)]

제 호			
	감	사	장
			주소 또는 소속
			직 성 명
	(감	사	문)
	년	월	일
	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○ ○ ○		

[별지 제3호서식(제9조 관련)]

제	호		
		상	장
			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
		(상	문)
		년	월 일
		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○ ○ ○	

(뒤쪽)

주요 경력	
연 월 일	이력사항
. . . ~ . . .	
. . . ~ . . .	
. . . ~ . . .	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
수여일자(년 월 일)	포상종류
. . .	
. . .	
. . .	
공 적 내 용	

[별지 제6호서식(제15조 관련)]

수 상 확 인 원			처리기간						
			즉 시					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					
주 소									
수 상 번 호	제 호	수상 년월일	년 월 일						
수 상 당 시 소 속		수 상 당 시 직 (위) 급							
수 상 내 용									
포 상 권 자									
<p>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0</p> <p>신청인 (인)</p> <p>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</p>									
<p>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.</p>		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담당자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확 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5px;">(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연락처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담당자		확 인	(인)	연락처	
담당자									
확 인	(인)								
연락처									
<p>20</p> <p>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</p>									